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문장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문장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경우, 김기대,
김인제, 김재형, 김정태,
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
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
박상구, 박순규, 서윤기,
성흠제, 송도호, 송명화,
송아량, 송재혁, 양민규,
오중석, 이정인, 이준형,
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
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‘저출산(低出產)’의 사전적 의미는 ‘아이를 적게 낳음’을 뜻하고, ‘저출생(低出生)’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음’을 의미함
- 따라서 ‘저출산’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의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있어서 여성을 객체로 평가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‘저출산’을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‘저출생’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저출산’을 ‘저출생’으로 함(안 제3조제1항제1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2호 중 “저출산·고령화”를 “저출생·고령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 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시민 건 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기후변화, <u>저출산·고령화</u>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 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 대책 수립</p> <p>13. ~ 17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<u>저출생·고령화</u> - ----- ----- -----</p> <p>13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